

전자출판물의 발전과 저작권법의 대응

저자: 정상조

발행년도: 1994

문헌: 저작권

권호: 27호 (1994년)

출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40]

I. 서론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르네상스는 16세기까지 교회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고 독점되다시피한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과 자료 그리고 우수한 문화예술 작품들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고, 활자에 의한 대량인쇄기술이 등장하여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관한 엄청난 잠재적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가능해졌다. 그럼으로써 그 후 18세기의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본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 동안 경쟁적으로 축적되어 온 지식과 정보가 오늘날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어 가는 시디롬(CD-ROM)과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on-line data base) 또는 멀티미디어(multi-media) 형태의 각종 전자출판물의 도움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전달되면서 인류역사상 문맹률이 가장 낮아져 가장 높아진 지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게 됨으로써, 가히 새로운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다가오는 21세기 변혁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 또는 전자출판물의 등장으로 종이 가 아닌 새로운 매체에 의하여 정보가 전달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책은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보매체가 등장하고 빠른 속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디스크책과 화면책 등을 포함하는 '전자출판물'의 개념을 확정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지만, 필자가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전자출판물은 문자·음성·영상 등의 정보가 종이 이외의 전자적 기록매체에 기록되고 컴퓨터의 도움으로 읽고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전자출판물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존 저작권법 등의 각종 관련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한 해석·적용상 문제점들과 직면하게 되었고, 전자출판물에 관련된 제작업자, 원저작자, 이용자(최종 소비자), 전산망 공급업자, 도서관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상충되는 이해를 조절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총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CD-ROM이나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또는 멀티미디어 형태의 전자출판물이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의 개인용 정보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ce: PDA) 도움으로 우리 인류의 생산방식(또는 최소한 노동환경)과 생활방식 또는 더 나아

[41]

가 사고방식까지도 바꾸어 놓게 될 중요한 투자대상임을 고려하면, 전자출판물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와 그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 특히 저작권법의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자출판물에 관련된 법제도에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검토되었는 바, 우선 저작권법에 있어서는 전자출판물이 어떠한 범주의 저작물(classification)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새로운 범주의 저작물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편집 저작물로서의 전자출판물이 보호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창작성(originality) 판단기준은 여타의 편집 저작물과는 달리 정보의 압축 및 저장 그리고 검색에 관한 창작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출판권 설정이나 출판허락 등의 이용허락에 있어서 원저작자의 적절한 보호와 이용의 편의를 위한 출판권 개념의 재조정과 저작권 집중관리의 활성화 그리고 전자기록매체 또는 일시적 기억장치에의 저장도 포함할 수 있는 복제의 개념의 재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또한, 전자출판물의 경우에 그 전달매체가 종이책의 경우의 종이라고 하는 매체와는 다르기 때문에, 도서 납본 제도하에서 납본해야 할 도서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소송법상 전자출판물이 증거방법으로 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서 서증조사의 방법 또는 검증의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점 이라거나 마지막으로 전자출판물에 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제도에 관하여는, 멀티미디어시대를 이끌어 가는 전자출판물의 보급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잠정적으로나마 조세감면의 혜택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검토도 해 보아야 할 것이나,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저작권법적인 대응방안만을 주요 검토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II. 전자출판물 제작의 비용과 이익

1. 전자출판물의 제작비용

전자출판물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관한 검토를 하기 위한 기초로서 전자출판물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익 등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먼저 분석해 봄으로써 전자출판물에 관한 보호의 필요성(justification)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1) 전자출판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3가지의 비용이 소요되는 바, 장비 또는 하드웨어 비용(hardware costs)과 소프트웨어 비용(software costs) 그리고 데이터 비용(data costs)이 그것이다. 하드웨어 비용은 주전산기(host computer) 또는 CD-ROM 제작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CD-ROM을 제작하는 전문제작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하드웨어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대규모 용량을 가진 주전산기를 필요로 하는 상업적 데이터 베이스의 경우에 소요되는 하드웨어 비용은 수십억 원에 달한다.

소프트웨어 비용에는 다시 두 가지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비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전산기에 입력된 자료와 정보를 정리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과, 다른 한편으로 전자출판물의 이용자들이 CD-ROM 또는 주전산기의 자료와 정보를 검색하고 출력해내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 주전산기에 입력된 자료와 정보를 정리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가운데 중요한 것의

[42]

하나는, 한정된 기억용량의 주전산기 또는 CD-ROM 속에 되도록 많은 자료와 정보를 저장하고 빠른 속도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정보 압축 소프트웨어(Data compression software)일 것이다. 그리고 자료와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정보의 수집이 용이해짐

에 따라서 전자출판물의 시장성 또는 상품성은 효율적으로 자료와 정보를 검색하고 출력해 내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달려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소프트웨어 비용도 하드웨어 비용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필요로 하고, 특히 적절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유지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수의 CD-ROM이 경쟁하고 있거나 LEXIS와 WESTLAW처럼 경쟁적인 데이터 베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검색속도와 정확성 및 이용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유지 및 개량을 위한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데이터 비용에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전산기 또는 CD-ROM에 입력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배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자료 및 정보 수집비용은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와 정보를 이미 인쇄된 형태로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회사로부터 그러한 자료와 정보를 구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가 있게 됨은 물론이다. CD-ROM이나 데이터 베이스를 출판하는 회사 가운데 종이책도 동시에 출판하는 회사들²⁾은 대부분 종이책을 출판하면서 책 속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이미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바 있기 때문에 처음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을 뿐이고 추가적인 데이터 비용은 적게 소요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회사³⁾의 경우에는 막대한 데이터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전자출판물의 내용이 되는 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수집하였는가라고 하는 위와 같은 구분에 무관하게, 그러한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고도로 노동집약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은 공통된다.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가 종이매체 위에 인쇄된 형태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당해 정보를 다시 타이핑하여 입력시키거나 전자 스캐너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입력시켜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쇄방법도 발달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인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종이매체 위에 정보를 인쇄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보의 디지털 신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곧바로 디지털 신호화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데이터 비용이 크게 감소되고 데이터의 입력 및 처리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비용과 이익의 비교 분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D-ROM과 데이터 베이스를 출판하기 위한 초기비용과 운영비용이 막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개발·제작된 전자출판물이 가져다 주는 혜택 또한 막대한 것이다. 잘 개발된 전자출판물을 한번 이용해 본 사람은, 전자출판물에 의한 조사·연구가 종이매체에 의

[43]

한 전통적인 방법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이용자의 일정한 검색 요구에 따라서 수 초 이내로 엄청난 분량의 정보를 이용자의 요구에 정확히 맞추어서 검색하고 출력하여 준다. 이용자들은 전자출판물의 이러한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편리함을 얻기 위하여 상당한 회비 또는 대가를 지급하려고 한다. 특히, 이제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전자출판물의 완벽성과 최신성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확신을 얻게 되면 이용자들은 상당히 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전자출판물을 이용하고자 하게 된다. 또한 전자출판물 가운데 CD-ROM은 600메가바이트의 정보기억용량(A4용지 약 2만 5천 매 분량의 정보

또는 1억 단어의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20권 내지 30권의 백과사전 등이 하나의 CD-ROM에 저장 및 정리되어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휴대의 용이함이 커다란 장점의 하나로 된다.주4) 전자출판물의 이러한 장점이 반영되어서, 미국의 경우에 1990년의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매출액이 동일한 정보에 관한 종이책 매출액을 상회하여 연간 미화 90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다 준 바도 있다.

전자출판물은 이와 같이 정보에의 접근을 효율화·신속화해 줌으로써 과학·기술·정보의 발전과 보급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출판물 산업은 정보산업의 일부로서 GNP 성장과 고용 창출 및 경제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산업으로 예상된다. 전자출판물 또는 관련된 서비스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의 금융 서비스 산업 등의 다른 산업 분야와 과학 연구 개발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자출판물의 제작·공급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해줌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허용해 주는 것이 전자출판물의 육성·발전에 긴요한 것이고, 따라서 과연 어떠한 법제도에 의하여 어느 정도로 보호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보호일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전자출판물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법제도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사실, 자유시장론이나 계약론 등의 다양한 가상적 모델들이 있는 바, 본고에서는 편집 저작물 또는 복합 저작물로서의 전자출판물이 저작권법상 어떻게 취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자출판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 또는 멀티미디어(multi-media) 시대의 등장에 따라서 저작권법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즉, 전자출판물 또는 멀티미디어 형태의 저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경우에, 창작성의 기준이라든가 복제 및 출판권의 개념 등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본다.

III. 전자출판물에 관한 출판권의 범위

특정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동일한 저작물을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출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전자출판물을 출판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그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출판권의 범위가 어떠한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출판권의 범위는 저작권

[44]

자와 출판자와의 사이에 출판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는가 아니면 단순한 출판허락계약이 체결되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출판권설정계약이 체결되면 출판자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범위의 배타적인 출판권('설정출판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주5) 반하여 단순한 출판허락계약이 체결되면 출판자가 가지는 출판권('허락출판권')의 범위는 출판허락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좌우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해석이 문제로 남는다.

1. 설정출판권

우선, 저작권법에 규정된 출판권이 설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출판권의 내용과 범위가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인쇄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서로 발행하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등의 기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문서 또는 도화의 형태로 발행하는 권리이다. 기계적인 방법에는 인쇄 이외에도 각종 현대적인 방법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문서 또는 도화의 형태 이외의 형태로 발행하는 것은 출판권의 범위 밖의 행위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문서 또는 도화라고 하는 복제물 형태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것을 널리 출판이라고 보는 광의의 출판개념에 따라서 출판권의 범위도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전자출판물을 예상하지 않고 마련된 법이기 때문에 법규정의 문리 해석으로도 그러한 광의의 출판개념은 무리가 있고, 저작권자의 커다란 손실 위에 출판자의 부당한 이익만을 옹호하기 쉬운 균형 잃은 견해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 즉, 문서 또는 도화는 저작물이 유체물에 재현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직접 보고 읽을 수 있는 행태의 복제물을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정한 기계장치에 의하여만 보고 읽고 들을 수 있는 녹음 테이프, 음반, 영화 필름, 비디오 테이프 등은 문서 또는 도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주6)

6) 이와 같은 저작권법상의 출판권 개념에 의하면, 저작물을 컴퓨터가 처리하는 코드로 변환하는 것은 출판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저작권이 출판권자에게 양도되었거나 출판계약에 그러한 코드화를 특별히 허락하는 규정이 없는 한, 출판권의 범위가 전자출판물 출판까지 포함하도록 넓게 해석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주7) 이와 같은 출판권 개념에 의하면, 저작물을 CD-ROM의 형태로 제작·판매하거나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하여 통신망을 통하여 보급하는 것도 저작권법상의 출판권의 범위 밖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이러한 논란과 문제는 결국 현행 저작권법은 전자출판물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마련된 법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보이고, 따라서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서 출판권의 개념을 다시 정의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와 출판업자와의 이해조정을 위한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거나 문화체육부가 출판계약서 등의 내용에 관한 지도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출판허락계약

[45]

출판허락계약하에서의 출판권의 범위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겠지만, 출판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계약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그 출판권의 내용과 범위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설정출판권의 내용과 범위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주8) 특히 출판허락계약에 의하여 출판자가 배타적인 출판권을 가진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 출판권의 내용과 범위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설정출판권의 내용과 범위와 마찬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출판허락계약 내에 출판권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물론 그러한 계약 규정에 따라서 출판자의 출판권은 결정될 것이다. 출판권에 관한 계약규정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설정출판권보다 좁은 범위의 출판권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설정출판권보다 넓은 범위의 출판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 저작물을 문서형태의 책으로 뿐만 아니라 CD-ROM 형태 또는 데이터 베이스 형태로 제작·보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허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포괄적 허락의 경우에 저작권자로서는 전자출판물의 제작과 보급에 대한 일정한 보상도 함께 규정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출판권설정계약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규정된 출판권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출판권을 허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출판물의 제작 및 보급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추측하건대, 전자사식 등의 출판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종이로 된 책의 출판과 데이터베이스 또는 CD-ROM의 제작 및 보급은 서로 밀접히 관련된 영업이 될 것이고 하나의 회사에 의하여 총괄적으로 취급되거나 다수의 회사가 공동으로 취급되기 쉬운 영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출판권설정계약이나 출판허락계약은 모두 전자출판물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주9) 그리고 방송작가가 자신이 창작한 방송극본을 방송국에 대하여 방송하도록 허락한 방송허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방송작가가 자신의 극본의 방송만을 허락한 것이지 결코 자동적으로 방송물의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판매에 대해서까지 허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는 바,주10) 출판허락계약의 경우에도 CD-ROM 등의 전자출판물의 제작 등에 관한 별도의 허락이 없는 한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당연히 전자출판물의 제작에 동의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자료목록에 관한 전자출판물

전자출판물의 제작 및 보급이 출판권의 범위 밖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출판물 제작업자가 원저작물을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서지 등의 문헌정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CD-ROM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각 문헌의 간단한 소개를 위한 초록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데에도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지는 의문이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하겠지만, 초록이 원저작물의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한 경우에는 초록 작성이 원저작물의 복제 또는 개작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저

[46]

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에서 어느 신문사가 동 신문에 실린 글들에 관한 초록과 함께 목록을 제공하는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프랑스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바 있다.주11) 그러나 미국에서 어느 판례편찬회사의 법령집을 기초로 해서 법률 정보전산망 회사가 판례의 초록과 인용 페이지를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하여 고객들에게 공급한 경우에, 미국연방 항소법원은 판례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주12) 영국 저작권법은, 별도의 공인된 저작물 이용 허락 체제가 없으면 학술적 또는 기술적 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동 문헌의 초록을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13)

IV. 편집저작물로서의 전자출판물

이상에서는 전자출판물의 제작 보급을 함에 있어서 출판업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출판허락을 받는 경우의 출판권의 범위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이것은 전자출판물의 기초가 되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여기에서 살펴보는 전자출판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전자출판물을 제작하는 출판업자가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저작물이 하나의 CD-ROM에 들어가 있고 데이터 베이스에도 입력되어 다시 편집되고 전달되고 이용되는데, 이러한 전자출판물 형태의 저작물에 대하여 누가 저작권을 취득하고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CD-ROM 형태 또는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된 저작물이 다수의 저작물 또는 정보가 모여서 이루어진 이른바 편집저작물인 경우에 그러한 편집 저작물에 대하여 누가 저작권을 취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CD-ROM 형태 등의 편집 저작물이 다수의 원저작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편집 저작물의 무단복제가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그러한 편집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편집 저작물이 일반적인 공유의 정보(Information in public domain)인 경우에는 편집 저작물 자체의 저작권 존재 여부에 관한 회의는 더욱 커진다.

편집 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해서는 나라마다 입법례와 그 기준이 상이한 바, 독일과 일본주 14) 그리고 우리 나라 등에서 저작물 창작성의 일반적 기준에 있어서, 영미에서 보다는 높은 상당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주 15) 독일에서도 본래는 저작물의 창작성이라는 요건에 심각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었는데, 70년대 말부터 창작성의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법원이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과학·기술적 성격이 있는 저작물이 일반 공중에 의해 널리 이용됨으로써 교육·연구 및 개발이 왕

[47]

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므로, 창작성이 낮은 평범한 수준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성립을 부인했다. 저작물 이용의 증진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법의 전반적인 체계의 변화에도 그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잘 정비됨에 따라서 창작성이 낮은 저작물의 상업적인 이용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주 16)

V. 복합저작물로서의 전자출판물

정보기술과 정보전달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출판물에 있어서도 문자정보와 영상 그리고 소리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전자출판물 또는 소위 복합 저작물(multi-media works)이 등장하여 저작권법상 어느 저작물로 취급해야 할 것인지 문제 된다. 예컨대, 1960년대의 문화사를 설명해 주는 전자출판물의 경우에 그 당시의 신문기사와 사진, 뉴스 보도의 녹음 또는 녹화된 내용, 관련된 음악과 전문가의 평론적 논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복합 저작물을 이용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이 하나의 CD-ROM 등의 전자출판물 속에 결합되어 소위 복합 저작물은 어느 형태의 저작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더욱 어려운 문제는 신문기사와 사진, 뉴스 보도 그리고 음악과 평론 등의 구성 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가 2인 이상이고 전자출판물의 저작권자와 상이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 전자출판물의 저작권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전자출판물의 이용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의무 이행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출판물의 제작업자로서는 최종 소비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전자출판물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정보와 지식의 접근을 허락하는 계약의 형태로 계약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등장하게 되는 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shrink-wrap licence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보

이용 허락계약이라고 하는 계약형태가 유효한 것인지 하는 유효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또한 전자출판물의 이용자로서는 문제된 계약조건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이용에 방해를 받게 될 위험성도 충분히 있고 특히, 도서관이나 대학정보센터처럼 다양한 전자출판물을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정리하고 종합적인 색인을 독자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에 어느 전자출판물 이용 허락계약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주17)

VI. 편집저작물에서의 저작자

1. 전자출판물의 제작자

우리 나라 저작권법도 저작물을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창작성의 요건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고, 특히 편집 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

[48]

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주18) 편집 저작물이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만, 소재의 수집에 많은 자본과 시간이 투입되었지만 그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편집 저작물은 보호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 저작물의 경우에도 누가 그 저작자로 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 편집 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한 다수의 자연인이 공동저작자로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의 창작성이 반드시 그러한 소재의 수집 및 입력이라고 하는 단순 작업을 하는 자연인으로부터 나온것인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편집 저작물이 공동저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공동저작으로 된 편집 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공동 저작자들은 그러한 편집 저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자본을 투입하고 총괄적인 기획을 한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도록 하는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편집 저작물의 제작자가 소요경비 등의 자본을 투입하고 소재의 수집, 선택, 배열 등을 기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집 저작물의 제작자가 곧 그 저작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주19) 편집 저작물의 제작자가 법인 기타의 단체인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면 그러한 편집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러한 법인 등이 그 저작자로 되고 저작권도 취득하게 된다.주20) 특히 CD-ROM이나 전산화된 데이터 베이스의 경우에는 그 제작자인 법인이나 단체가 위험부담 속에 투자를 하고 그 제작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작자로 된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창작성이 없는 저작물을 단순히 전산화하여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판매하는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치 음반 등의 제작업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과 유사한 권리를 전자출판물의 제작업자에게도 부여해야 할 것인지 여부는 전자출판물 제작의 구체적인 관행과 업계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2. 전자출판물의 공급업자

전자출판물의 이용이 일반화·활성화되면 전산망을 통하여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기업이 생기게 되고, CD-ROM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CD-ROM을 구입하기 어렵

기 때문에 전자출판물 공급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다수의 CD-ROM과 기타의 데이터 베이스 정보를 공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전자출판물 공급업자의 저작권법적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물을 녹음·녹화·복제·방송할 권리라고 하는 저작권접권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전자출판물 공급업자도 유사한 저작권접권이 인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무선 또는 유선에 의하여 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접권이라

[49]

고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지에서, 유선송신의 방법으로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유선송신사업자에게도 유사한 저작권접권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유선송신에 관하여 일본은 그 저작권법 개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관한 데이터 통신에 관하여 종전 저작권법은 저작권접권은 물론 저작권자의 유선송신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종래의 저작권법에는 유선방송권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데이터의 흐름이 일방향형이 CATV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그것이 쌍방향형인 데이터 통신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보호의 불충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본 개정 저작권법에는 새로이 유선송신권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선송신권에는 종래의 유선방송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법개정의 결과 데이터 베이스의 온라인 서비스에는 저작자의 유선송신권이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일본의 입법례는 전산망을 통하여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전자출판물 공급업자에게 저작권접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작권 내용의 일부로서 유선송신권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출판물 공급업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음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일본 저작권법하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출판물 공급업자 또는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가 원제작자로부터 제공을 받은 원데이터를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가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가공 행위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이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보호를 받게 될 뿐이다.

VII. 원저작자와의 관계

1. 저작권 집중관리를 통한 원저작물의 이용

전자출판물의 제작·보급이 급증함에 따라서, 수십 권 책 분량의 정보와 사실 또는 저작물이 용이하게 복제되고 개작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신속하고 간이하게 저작물 이용료를 징수하고 지급하는 효율적인 절차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특히 전자출판물은 대부분 다수의 원저작물을 수집하고 편집·배열·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출판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그러한 원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료를 지급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용하고자 하는 원저작물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시작하여 당해 원저작물의 저작자 및 이용 조건 등의 관련된 정보를 알아 내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고 이용료의 산정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하지 아니하면 저작물 이용의 장애요인으로 되어 버린다.

우선, 원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관이 원저작물의 등록을 받고 공표된 원저작물의 목록과 저작자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소

위 무방식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물에 관한 정보가 일정한 기관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수집·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작권 집중관리(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저작권 집중관리가 없으면 전자출판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그 소재로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해 소재에 대하여 저작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알기 어렵고, 누가

[50]

저작자인가 하는 것과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용료를 산정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특허법 등의 다수의 산업재산권법의 경우에는 권리설정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권리가 형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작권 집중관리(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다.주21) 특히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복합 저작물 또는 멀티미디어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음악저작권협회와 특정 범주의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집중관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범주의 저작물을 모두 총괄하여 집중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포괄적인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의 설립은 모든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허락 조건이 통일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용허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을 가지게 된다. 특히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다수의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하게 되고 이용자 또는 경쟁업자들은 그러한 전자출판물을 이용하여 제3의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저작물과 저작물과의 관계는 2중, 3중으로 생기게 되고, 또한 전자출판물의 이용에 있어서 그 소재되는 저작물을 이용자가 임의로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개작에 대한 이용료의 산정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는 이러한 2중, 3중의 원저작물 이용 또는 개작의 경우의 이용료를 통일적으로 산정하여 저작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주22)

저작물이용료를 징수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적발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그러한 사회적 비용(social costs)을 절감하기 위해서, 독일과 프랑스 등의 유럽 대륙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이용되는 복사기 등에 일정한 보상금을 부과해서 그에 의해서 징수된 자금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있다. 다른 한편,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신속하고 저렴한 간이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 정착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음악실연자의 권리(저작인접권)에 관해서는 모든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의해서 이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하여 왔고,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도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집중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도 일본 문화청의 지원 아래 1991년 9월에 소위 복사권센터가 설립되고 1992년 4월부터 저작물 이용 및 저작물 이용료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일본 전경련의 협력하에 송하전기산업과 일산자동차 등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1,144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1993년 3월 말 현재 그 계약금 합계는 약 7천만¥에 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저작물 이용에 관한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하는 바,

그 구체적

[51]

방법으로서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유럽에서와 같이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할 것인가는 더욱 깊이 있는 연구 검토를 거치고 이해 관계 있는 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참고 자료로서 미국의 저작권집중관리센터(the 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를 살펴보면, 저작권집중관리센터는 197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 이용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자, 출판사 그리고 저작물 이용자의 3자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다. 저작권집중관리센터의 실질적인 설립 배경은 출판사들이 저작권 집중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이용료 징수를 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주로 출판사들의 출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회는 결론적으로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료를 지급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간이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저작권집중관리센터는 바로 이러한 의회의 제안에 따라서 1978년에 설립된 것이다.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대학수업에 이용될 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복제업자가 행한 다량의 발췌복제도 복제업자의 이윤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 한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시한 최근의 판결 Basic Books v. Kinko's Graphics주23) 등에 비추어 보면, 모든 교육기관과 상사기업들이 똑같이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저작물 이용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저작권집중관리센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저작권집중관리센터의 기능을 보면, 저작권집중관리센터는 저작물 이용자를 위해서 이용허락을 받고 또한 저작권자를 위해서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아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비영리 단체라는 것은 저작권집중관리센터가 애초에 뉴욕의 비영리회사법에 따라서 설립되었다는 것이지만, 1982년에 저작권집중관리센터와 국세청과의 소송(CCH Dec. 39, 482-79 TC No.51)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저작권집중관리센터는 출판사들의 출연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 그 주된 목적의 하나이기 때문에 연방세법상(Sec. 501(c)(3) I.R.C. 1954) 소득세 면제 대상은 될 수 없다. 저작권집중관리센터는 포괄이용허락제도 또는 연별이용허락제도(Annual Authorizations Service: AAS)에 의해서 단체이용자들에게 8천 개 가량의 출판업자에 의해서 소유된 1백만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해 주고 있다. 저작권집중관리센터는 또한 저작물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저작물 이용시마다 저작물 이용을 통지하고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해 주는 개별이용허락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래보고제도(Transaction Reporting Service: TRS)도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집중관리센터에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하는 데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고 저작물 이용자도 객관적 이용료 이외의 아무런 추가적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저작권집중관리센터는 이러한 저작물이용허락제도를 대학과 정부기관들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고, 저작물 이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저작물을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52]

저작권집중관리센터는 여러 가지 방식의 저작물이용허락제도를 제공하고 있는 바, 1978년

도에 마련한 개별이용허락제도(TRS)는 저작물의 복제를 보고하는 수동적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저작물 이용자들은 자신의 복사기 옆에 저작물 복제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마다 저작물 복제에 관한 보고를 하고 이용료를 지급한다. 개별이용허락제도는 따라서 저작물 복제에 관한 지속적인 기록과 보고를 필요로 한다. 개별이용허락제도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매 4기분마다 갱신되는 저작물 목록에 있는 것에 한정된다.

또한, 포괄이용허락제도(AAS) 또는 연별이용허락제도는 저작물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과 기타의 대규모 단체들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면, 저작물 이용자는 약 8천 개의 출판사로부터 출판된 1백만 여 저작물에 대한 내부적 복제를 매년 허락받으며 연별 일회지급에 의한다. 추가적인 복제기록의 무라든가 추가적인 지급의무는 없다. 이 제도에서 저작물이용료는 특정 산업 내의 일정 사업장에서 60일간 실제로 이루어지는 저작물 복제에 대한 표본조사를 기초로 해서 산정된다. 각 출판사가 정한 이용효율과 함께 상당수의 표본조사의 결과를 종합해서 각 업체별 연별 이용료를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표본조사에 의해서 개별이용허락제도에 의한 이용료 산정에 부수되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경감된다.

2.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

복합저작물 형태의 전자출판물에 있어서 원저작자의 권리 보호가 충실해지기 위해서는 어문 저작물과 음악 저작물 및 영상 저작물 모두를 포괄하는 저작권 집중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이제까지의 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그러한 이상적인 저작권집중관리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및 원저작권자의 보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개정에 의하여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한 개선방안으로는 미국 저작권법에서처럼 저작물의 등록 및 납본에 대하여 법정손해배상금 청구 및 변호사비용 청구 등을 전제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저작물의 등록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저작물의 등록 신청시에 저작물의 신탁관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고 저작물을 수탁 관리할 단체를 지정해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 가지 개선방안으로는 그와 같이 포괄적인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녹음기 및 VTR 등에 대하여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취지에서 개인용 컴퓨터와 모뎀 등의 각종 통신장비에 대하여 사적복제보상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원저작자 권리의 소진

전자출판물 보급의 일반화에 따라서 저작물 유통과 이용이 급증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원저작물이 2중, 3중, 4중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따라서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이용과정을 거슬러올라가서 최초의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다수의 영상 저작물을 소재로 한 명화전집의 전자출판물을 제작한 경우에 특정 영상 저작물의 내용으

[53]

로 된 소설이나 음악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진 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전자출판물 전체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특

정 원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있어서 특정 지역 내에서의 배포를 조건으로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한 당해 전자출판물의 국제적 보급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송사업자 등에게 인정된 저작권접권도 최초의 원저작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커다란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자출판물의 일반화 및 무선·유선의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저작물 이용 및 공급이 다수의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모든 단계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 완전한 형태로 작용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이미 출판되어 시판된 바 있는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고 다만 원저작자에게 일정한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일종의 법정이용허락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의 제작에 관한 법정이용허락제도'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확대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나라 현행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이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 즉 제3의 경쟁적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24) 전자출판물의 보급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판매용 음반 속의 음악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일반 저작물 전체에 대하여 법정이용허락을 확대하고 출판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요구한다는 등의 요건도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다. 주25) 또한, 영국의 1990년 방송법은 방송 프로그램이 TV저널이나 전산망의 소비자 정보란 등에서 소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송국이 방송 프로그램 목록이라고 하는 편집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제한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법정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전자출판물의 법제화에 있어서 고려해 볼 만한 개선방안이라고 생각된다.

VIII. 전자출판물과 복제의 개념

오늘날의 데이터 베이스는 대부분의 경우에 전산화되어 있고 CD-ROM의 경우에는 물론 전산기계의 도움으로 제작되고 그 내용을 읽어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전산기계의 도움으로 제작·배포·이용된다는 것은 대단히 편리하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용이하게 복제할 수 있다는 커다란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종이로 된 책의 경우에는 기존의 복제기기가 아무리 발달해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만 복제될 수 있고 복제된 저작물은 원본에 비하여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지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아주 쉽고 신속하게 그리고

[54]

원본과 완전히 동일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단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전자출판물의 출현으로 인하여 저작권 보호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 것은 분명한 것이고, 따라서 복제의 의미를 새롭게 구체화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저작권법은 복제권의 범위를 규정하는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전자출판물의 출현과 관련하여 복제의 의미를 보다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복제의 개념 가운데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저작물로 일시적 또는 고정적 기억장치에 입력하거나 그러한 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저작물을 출력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된다.주26) 이와 같은 복제 개념에 의하면, 전자출판물에 다수의 원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전자출판물의 기획 및 제작을 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한의 작업으로서 원저작물을 컴퓨터 등의 전산기억장치에 입력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입력행위가 복제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전자출판물을 이용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검색하거나 프린트해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도 반드시 저작물이 컴퓨터의 RAM과 같은 일시적 기억장치에 기억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고 따라서 저작권법상 복제행위가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아무런 사용료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CD-ROM 형태나 데이터 베이스 저작물을 플로피 디스크로 복제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다.

전자출판물로부터 프린트해 내거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시키는 행위를 복제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짐에 따라서 전자출판물 제작업자들은 최종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만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한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shrink-wrap licence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출판물 제작 및 공급업자와 최종 소비자와의 사이에는 다수의 중간업자가 개입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고, 그러한 경우에 전자출판물 제작업자가 마련한 정보이용허락계약이 최종 소비자와의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즉 최종 소비자가 그러한 계약에 구속되는가 하는 계약 유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IX.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대여

우리 나라 저작권법은 도서관의 경우에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나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도서관의 기능이 정보와 자료의 제공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저작권의 제한으로서 인정된 것인 바, 이러한 저작권 제한이 그대로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간단히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도서관이 그 이용자를 위하여 또는 대학정보센터가 학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이용자 또는 학생과의 사이에 온라인 정보 전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존의 종이책으로 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CD-ROM에 담긴 정보까지도 이용자에게 제

[55]

공해 주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인지 문제 된다. 특히 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복제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여라고 볼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대여라고 보는 경우에도, 우리 나라 저작권법은 공중대여권(rental rights)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도서관에 의한 대여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없지만, 공중대여권이 도

입된다면 도서관의 대여행위는 어떻게 규제될 것인지 그리고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특히 CD-ROM 등의 전자출판물을 대여해 주는 것은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으로서는 소장 자료를 단순히 복제하거나 대여해 주는 업무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을 위하여 색인을 만들게 되는 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자출판물의 색인을 각색하거나 목차를 변경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고, 도서관 이용자가 전자출판물을 대여하거나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한 후 당해 전자출판물을 복제하는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도서관은 저작권 침해 또는 계약위반의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기게 될 것이다.주27)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적이용(private use) 또는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하여도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 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은 사적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종이책의 이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전자출판물을 프린트해 내거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개인적 전자기억매체에 복제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사적이용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되는가 문제 될 것이다. 또한 사적이용 또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 출력 또는 복제의 유형과 범위가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도 그러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저작권자의 구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보다 심각한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특히 복합 저작물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저작물 이용료 기준에 의해서는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계산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주1)

Philip H.Niller, "Life After Feist: The FirstAmendment and the Copyright Status of Automated Databases", 60 Fordham L.Rev.507(1991).

주2)

종이책으로 된 판례집과 데이터 베이스 WESTLAW 및 CD-ROM 시리즈 모두를 출판하고 있는 West Publishing Company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주3)

LEXIS라고 하는 데이터 베이스만을 출판하는 Mead Data Central, Inc.이 그 예이다.

주4)

David Fanning, CD-ROM: Research and Information Publishing, British Book News(March 1993), p.148.

주5)

저작권법 제54조 내지 제60조.

주6)

황적인/최현호, 저작물과 출판권, 87면 참조.

주7)

송진정행, 컴퓨터시대의지적소유권(동경, 기ょうせい, 1988), 57.

주8)

허희성, 신저작권법촉조해설, 288면.

주9)

Michael F.Flint, A User's Guide to Copyright(London: Butterworths, 1990), p.315

주10)

1985년 5월 28일 대법원 판례.

주11)

Socit Microfor v Sarl 'Le Monde'[1988] FSR 519, recited from, Dworkin and R.D.Taylor, Copyright, Designs &Patents Act 1988(London: Blackstone Press, 1989), p.188.

주12)

West Publishing Co. v Mead Data Central Inc., [1986] 799 F.2d 1219.

주13)

1988년도 영국 저작권법 제60조.

주14)

일본 저작권법은 특히 데이터 베이스 저작물이 그 구성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인 구성에 의하여 창작성을 가진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는 창작성 요건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2조의2).

주15)

Jane C.Ginsburg, "Creation and Commercial Value: Copyright Protection of Works of

Information", 90 Columbia L.Rev.1805(1990) at 1909.

주16)

Dennis S.Karjala, [1988] 12 EIPR 360.

주17)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Finding a Balance: Computer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Challenge of Technological Change(OTA: US Congress: 1990), p.24.

주18)

한국 저작권법 제2조 및 제6조.

주1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데이터 베이스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보고서, 32면.

주20)

저작권법 제9조.

주21)

석전정태, マルチメディアソフトの 창작と 지적재산권문제, SOFTIC Symposium Presentation Paper(1993. 11.).

주22)

일본 저작권 심의회 제7소위원회, 데이터 베이스 및 뉴미디어에 관한 보고서(소화 60년 9월, 문화청)도 동일한 취지의 보고를 한 바 있음.

주23)

758 F.Supp. 1535(1991, SDNY).

주24)

한국 저작권법 제50조.

주25)

Brian Kahin,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blem in Multimedia and the IMA Strategy, SOFTIC Symposium(1993. 11.)11~10.

주26)

영국 1988년 저작권법 제17조 2항의 유사한 규정 참조.

주27)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Finding a Balance: Computer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Challenge of Technological Change (OTA, US Congress 1990), p.18.